



##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신 소방청장(소방장비항공과장)  
(경유)

제목 “고압가스 제조(충전) 시설 신고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관련근거 : 소방장비항공과-2670(2018.05.01., “고압가스 제조(충전)시설 신고 관련 질의”)

2. 귀 청에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질의내용

- 질의 1. 안전충전함을 앵커볼트 비고정식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 안전충전함을 설치하는 공기호흡기용 용기 충전시설의 설비를 앵커볼트 비고정 설치 가능 여부
- 질의 2. 실내에 공기정화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압축기의 공기흡입구를 건축물 외부로 인출하지 아니하고 사용 가능 여부
- 질의 3. 공기압축기 흡입구를 외부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가동시마다 외부로 인출하여 사용 가능 여부
- 질의 4. 충전된 공기호흡기용 용기의 소방차량 적재 보관 가능 여부
- 질의 5. 소방관서 내에 설치된 용기 충전시설의 경계책 설치 대상 여부
- 질의 6. 소방차량 출동 시 용기를 반출하는 경우 저장능력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 대상 해당 여부
- 질의 7. 공기압축기의 각 단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에 고법에 따른 검사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 8. 시설의 안전밸브 설정 압력을 공기호흡기 용기 최고충전압력의 1.1배로 설정 가능여부
- 질의 9. 소방기관에서 공기호흡기용 용기의 밸브를 교체하는 행위의 수리 해당 여부
- 질의 10. 구내방송설비를 갖춘 소방청사에서 긴급사태 전파를 위한 통신설비를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검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KGS FP111 2.2 단서에 따라 안전충전함이 설치된 공기 호흡기용 용기 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앵커볼트 고정 등의 기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 안전충전함을 앵커볼트 비고정식으로 성능인증 받은 경우에는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압축기 및 안전충전함을 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KGS FP211 2.6.12에 따라 공기호흡기용 용기를 충전하기 위한 공기압축기의 흡입구는 가솔린, 경유 등 엔진의 배기로 인하여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엔진의 배기구가 위치한 장소와 격벽 등으로 분리된 곳 또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유입하지 아니하는 외기와 접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기압축기가 엔진의 배기구가 위치한 장소와 격벽 등으로 분리된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별도로 흡입구를 외기와 접한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서는 공기압축기의 흡입구를 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질의 4에 대하여

소방관서의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야 하는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총

전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5에 대하여

KGS FP211 2.9.3 단서에 따라 저장설비, 처리설비 및 감압설비가 건축물 안에 설치된 경우에는 경계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소방관서 건물 내에 공기압축기와 공기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계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질의 6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저장능력”이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저장설비”란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방차에 공기호흡기 용기를 적재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도 충전용기보관설비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변경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질의 7에 대하여

KGS FP211 2.6.1.2 (2) 단서에 따라 성능확인 안전충전함과 함께 설치된 공기압축기는 그 압축기 최종단에만 과압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기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에 설치된 다단식 압축기의 각 단에 설치하는 안전밸브는 검사품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질의 8에 대하여

KGS FP211 2.6.1.5에 따라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은 최고허용사용압력(MAWP) 이하로 하고 있으며 최고허용사용압력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압력을 최고허용사용압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은 해당 시설의 설계압력 이하로 설정하여야 하며, 해당 충전시설에서 충전하는 용기의 최고충전압력과는 무관합니다.

○ 질의 9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서는 용기의 밸브를 교체하는 자의 자격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질의 10에 대하여

KGS FP211 2.8.3에 따라 고압가스충전사업소 안에는 표 2.8.3에 따른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표 비고 2에 따라 통신설비는 사업소의 규모에 적합하도록 1가지 이상을 구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방청사에 구내방송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추가로 통신설비를 구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끝.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

과장	유명종	부장	2018. 5. 14. 심재호	처장	허영택
협조자					
시행	기준처-776		(2018. 5. 14.)	접수	소방장비항공과-2903 (2018.05.14.)
우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1390		/	www.kgs.or.kr
전화번호	043-750-1295	팩스번호	043-750-1921	/ mjyoo@kgs.or.kr	/ 대국민 공개
국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